

2022  
문화재수리업  
등록절차 —

# 문화재수리업등 등록

신청방법	방문, 우편	접수 및 처리기관	관할 시·도
수수료	종합문화재수리업(5만원) 전문문화재수리업 · 문화재실측설계업 · 문화재감리업(3만원)		
신청서	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 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서식 7호)		
신청자격	본인 또는 대리인		
구비서류	있음(6p 참고)		
발급서류	문화재수리업등 등록증 (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서식 9호)		
관계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(제14조 제1항)</li><li>○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(제12조 제1항)</li><li>○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(제6조) (제7조 및 별지7)</li></ul>		

# 문화재수리업 등록 절차

---

## ① 설립 자본금 확보

---

- 대표자 명의로 통장 개설
- 예금통장에 해당 업종별 등록요건의 자본금 100%가 통장 잔고로 있어야 함
- '은행잔고증명서' 발급 필요

---

## ② 주사무소 계약

---

- 주사무소에 대한 사무소 매입 또는 임대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를 통하여 주사무소 보유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함
- 대표자 명의 계약

# 법인등기 후 법인명의로 명의 변경 필요

---

## ③ 법인 설립(법인만 해당)

---

- 법인은 법원에 등기를 하여 '법인 등기부등본'을 생성하여야 함
- 필요서류 : 창립총회 회의록(공증받은 회의록 사본), 정관, 주주명부, 은행잔고증명서 등
- 등기 업무 처리 : 법무사 대리 또는 대표자가 직접 처리

---

#### **④ 관할 세무서 '사업자등록증' 신청**

---

-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
  - 필요서류 :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총회 회의록(공증받은 회의록 사본),  
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
  - 최초 사업자등록은 문화재수리업외 다른 업종(등록요건이 필요 없는 업종)으로  
등록
- 

#### **⑤ 법인명의 통장 개설, 자본금 이관(법인만 해당)**

---

-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여 법인 명의 통장 개설
  - 대표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을 법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후  
이체한 법인통장에서 1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
- 

#### **⑥ 기업진단보고서 신청**

---

- 세무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'기업진단보고서'를 받음
  - 자본금 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기업진단 최소요건임  
(대표자 명의 통장 보유기간도 합산될 수 있음)
- 

#### **⑦ 자본금 확인서 발급**

---

-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(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) 관련  
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해당하는 금액을 즉 현금을 예치해야 하며  
예치기관으로는 해당 조문 제1항제2호에 따라 문화재수리협회에서 발급 가능
  - 자본금은 업종별로 상이
-

## ⑦ 자본금 확인서 발급

-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
  - 가.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은 문화재수리업등을 위한 자본금(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)으로 문화재수리업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,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
  - 나.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함
- 자본금 확인서 발급 방법 : 원칙은 창구 방문이지만 지방일 경우 등기우편 송부

### 업종별 예치금 기준

1. 종합문화재수리업	법인	4천만원 이상
	개인	4천만원 이상
2. 전문문화재수리업	법인	1천만원 이상
	개인	1천만원 이상
3. 문화재실측설계업	-	-
4. 문화재감리업	법인	1천만원 이상
	개인	1천만원 이상

### 필요서류

법인사업자	개인사업자
1. 사업등록증 사본	1. 사업자등록증 사본
2. 법인인감증명서	2. 개인인감증명서
3. 등기사항 전부증명서	

\*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발급된 것이어야 함

\* 자본금 확인서 발급시 필요서류: 조합가입 신청서/ 예치금신청서/ 자본금확인서 발급신청서  
(관련서식은 문화재수리협회로 별도 문의)

---

## **⑧ 기술자격 요건 준비 및 등록**

---

- 업종별로 요구하는 필수 종목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고용함
  - 4대 사회보험 가입(고용, 산재, 국민, 건강)
- 

## **⑨ 문화재수리업 등록 신청**

---

- 사업장 주소 기준 관할 시·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
(6p 제출해야 하는 서류 참고)
- 

## **⑩ 문화재수리업등록증 발급 이후 조치사항**

---

- 등록증 수령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'문화재수리업' 또는 문화재수리업 업종명으로 업종 추가
-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인식 등록
- 나라장터 가입 및 인증서 등록 후 투찰 가능

\* 설립 소요 기간 : 법인설립부터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까지 약 60일 내외

---

## 제출해야 하는 서류

서류	서식 및 법령	조건
1. 문화재수리업등 등록신청서	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	
2. 기업진단보고서		문화재청장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함
3. 자본금 확인서  가. 법인: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인감증서, 가. 법인: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. 개인: 사업자등록증 사본, 개인인감증명서	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	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
4.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1부	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	
5.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		
6. 사무실 증빙서류  가. 자기 소유인 경우: 건물 등기부등본 나.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: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. 임대차인 경우: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	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증명하는 서류	
7. 대표자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	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

\* 제출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함

\*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함

---

2022 문화재수리업 등록 절차

